## 아름다운 이 수 행복한 시 원

제2020-165호 2020년 9월 1일(화)





보

# 시정지표

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

■ 발행인: 여수시장 ■ 발행소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고 시

# 공 고

ㅇ 여수시	공고	제2020-2155호	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 위원 모집공고	3
<ul><li>여수시</li></ul>	공고	제2020-2167호	전 사업 양수인가 공고	5
<ul><li>여수시</li></ul>	공고	제2020-2171호	"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" 제정안 입법예고	6
ㅇ 여수시	공고	제2020-2178호	『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』 일부개정안 입법예고	11
<ul><li>여수시</li></ul>	공고	제2020-2181호	도로지정공고[돌산읍 우두리 504-18번지 외 1필지(505-10번지)]	16
<ul><li>여수시</li></ul>	공고	제2020-2183호	학동북4길 일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	17
o 여수시	곳고	제2020-2184ㅎ	[부돗사소유권 이저듯기 등에 관하 특별조치법] 보증이 위촉사식 곳고	24

# 기 타

회				
람				

# 공 고

「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미리 알려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후보자를 모집하고자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# 2020년 9월 1일

# 여 수 시 장

####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 위원 모집공고

- 1. 모집기간 : '20. 9. 1. ~ 9. 16.(15일간)
- 2. 모집인원 : 8명 이내
- 3. 위원역할 :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함
  -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
  -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 - 대중교통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 -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조정 · 개선에 관한 사항
  - 대중교통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
  - 시내버스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
  -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
  - 시내버스 정류소 위치조정 등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  - 시민평가단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
 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4. 자격기준

- 교통전문가, 교통、경제、경영、회계학과 교수, 연구기관 연구원 등
- 언론인, 법조인, 공인회계사, 세무사 또는 노무사 등
- 5. 선정방법 : 서면심사 후 적격자 선정
- 6. 선정기준
  -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
  - o 전문분야·기관 단체별로 적정 인원을 내실 있게 구성
  -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여성 신청 적격자 우선 선정
    - \* 동일단체(소속) 복수 위원 접수 및 선정 지양
- 7. **대상자 선정 통보** : 2020. 9. 23.(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통보)
- 8. 접수장소 : 여수시 교통과(☎061-659-4155)[여수시 시청로 1(학동), 교통과]
- 9. 접수방법 : 직접 방문, 우편(등기)
- 10. 제출서류 :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신청서 (자격 증명서류 포함) 및 자필 이력서 각 1부

## 11. 기타 참고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.
- 위원회 참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 수당을 지급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교통과(☎061-659-4155)로 문의하시면 상세 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#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 신청서

			접수	번호				
성 명	한글 : 한자 :	연	락 처	자택 : 휴대폰 :				
생 년 월 일 (성 별)			(남, 여	])				
주 소								
직 업		직장소지	내지					
(구체적으로 기재)		직	종					
소속/단체								
	위원회명	직 위		기 간	비고			
 각종 위원회			•	. ~				
참여경력								
기타 특기사항								
위와 같이	「여수시 교통장	성책발전위원호	되」 위원	<u>-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자 지원			
신청하오며, 기	재사항은 사실되	가 다름 없음·	을 확인합	합니다.				
		2020년	월	일				
신청인 : (서명 또는 날인)								
여수시장 :	여수시장 귀하							
	서(사진 부착) 1년 증명 서류 1부	7		신청 수수료	: 없은			

\*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: 동의 □ 동의하지 않음 □

- 수집한 개인정보는 위원회 구성 • 운영이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음

						०]		력	서	
사	7	<u>रो</u>	성	명				(한자)	:	
			생년	월일		년	월	일 (만	세)	
드 드	루기준지	.]								
주	2	<u>ک</u>								
년	월	일			학	력	사	항		학 교 명
년	월	일			경	력	사	항		기 관 명
뗭	월	일			王	상 및 현	형 벌 시	<b>-</b> 항		기 관 명

이력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.

2020년 월 일

작 성 자 : (서명/인)

#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

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(태양 광발전)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,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## 2020. 9. 1.

# 여 수 시 장

1. 공 고 명 : 전기사업(태양광발전) 양수인가 공고

2. 공고기간 : 2020. 9. 1. ~ 2020. 9. 20.

3. 공고내용 : 전기사업(태양광발전) 양수인가 내역

구분	허가 번호	용량 (kW)	발전소명 (대표자)	<u></u>	소 재 지
양도인	여수		<b>뺙순 태양광(뺙순)</b>	전남 여수시 성산4길 5-16	
양수인	제564호	18	두 림빌 태양광(산심)	전남 여수시 무선6길 42-4 (선원동)	여수시 화장동 790-8

# 공 고

「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 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 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9월 1일

# 여 수 시 장

# 「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

# 1. 제정 취지

- O 여수지역 이동노동자는 800여명이 활동 중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법적 인 보호에서 배제
- O 전국적으로 11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 증가추세에 있어 전 남 최초 쉼터 설치로 이동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
- O 관련 상위법 규정: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·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 2. 주요내용

가, 목적(안 제1조)

- O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
- 나. 설치 및 기능 (안 제3조)
  - O 휴식·소통 및 사무공간의 제공
  - O 노무 및 취업상담 등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 연계
- 다. 운영시간(안 제5조)
  - O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운영
- 라. 위탁(안 제7조)
  - O 노동관련 전문기관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
- 3. 입법예고기간 : 2020. 9. 1. ~ 9. 17(17일간)

#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참조: 산업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연락처
- 기타 의견
- 나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(번호 061-659-5817)
- 다. 기타 참고사항
  - 우편주소 : 여수시 시청동1길 23 (학동, 여수시청 산업지원과)
  - 업무담당자 : 산업지원과 박인호(pih8@korea.kr)
  - 문의전화: 061-659-3638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	「여수시	이동노동자	쉼터	설치	및	운영조례
---------	------	-------	----	----	---	------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<u>찬성</u> 찬성	여부 반대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-			

##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(안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이동노동자"란 대리운전기사, 택배기사, 학습지 교 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,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.
- 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이동노동자의 휴식·소통 및 사무 공간 제공
  - 2. 이동노동자에게 TV 등의 문화 서비스 제공
  - 3. 이동노동자에게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 연계
- 제4조(개관 및 휴관) ① 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.
  - 1. 토요일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
  - 2. 그 밖의 센터의 안전점검,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정하는 임시 휴 관일

-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 관을 할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5조(운영시간)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6조(관리)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쉼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리자로 하여금 보고 및 조치하게 할 수 있다.
  - 1.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
  - 2. 음주, 흡연 또는 도박을 하는 경우
  - 3.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
  - 4.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제7조(위탁) 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관련 전문기관,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③ 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여수시공고 제2020-2178호

「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1일

# 여 수 시 장

「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 이유

○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「여수시 관광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- **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존속기한의 연장** (안 제3조)
  - "2020년 12월 31일까지" ⇒ "2025년 12월 31일까지"
-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의 용도 추가 (안 제4조)
  - "관광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개선사업" ⇒ 신설

#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관광과장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(학동) 여수시청(관광과장)

- 전자우편 : ksy3046@korea.kr

- 팩 스 : (061) 659-5827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관광과 (전화 061-659-3867, 팩스 061-659-582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:「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그게이 취묘병 개호	찬성여부		이거(기호)	기타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	반대	의견(사유)	참고사항

#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"2020년 12월 31일까지"를 "2025년 12월 31일까지"로 한다.

**제4조(기금의 용도)** 중 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신설한다.

- 5. 관광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개선사업
- 6.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	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
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	<u>202</u> 5년 12월 31일까지
로 한다.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	<u>로</u>
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	
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	
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의 다	제4조(기금의 용도) ①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
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할 수	
있다.	<u>.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설&gt;</u>	5. 관광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
	개선사업
5.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산업의 진흥	6.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산업의 진흥
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	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
어 님	어 ㅂ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#### [여수시 공고 제2020 - 2181호]

# 도로지정 공고

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504-18번지 외 1필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,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#### 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도로위치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㎡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고
돌산읍 우두리 504-18번지 외 1필지(505-10)	33	4	148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# 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0. 9. 1.

여 수 시 장

여수시 공고 제2020-2183호

## 여수시 학동북4길 일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

여수시 학동북4길 일원 노상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운영함에 따라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### 2020년 9월 1일

# 여수시장

- 1. 행정예고 할 내용 : 여수시 학동북4길 일원(학동북3길 7 ~ 학동북4길 8 구간)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 운영
- 2. 행정예고 및 목적: 여수시 학동북4길 일원(학동북3길 7 ~ 학동북4길 8 구간) 노상에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 주민에게 일정 주차구획을 배정 후 주차요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행정예고 후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운영을 실시하고자 함
- 3. 운영구간 및 내용 : [별첨 2] 위치도 참조
  - 운영구간 : 여수시 학동북4길 일원(학동북3길 7 ~ 학동북4길 8 구간), 1000m
  - 운영시간 : 시간선택제(주간, 야간, 전일) 적용

- 전 일: 00:00 ~ 24:00

- 주 간: 08:00 ~ 20:00

- 야 간: 20:00 ~ 08:00

○ 주차요금

(단위 : 원)

구 분	전일제	주간제	야간제
거 주 자	15,000/월	10,000/월	5,000/월

- 부정주차 지도 및 단속
  - 단속근거 및 단속 대상
    - 주차장법 제8조의 2(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)
- 2호)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
- 4호)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
- 5호)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- 단속방법(부정주차) 및 가산금 부과
  -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 명령 및 견인 조치
  - ·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및 그 주차요금의 2 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
- 신청 및 배정
  - 신청대상 :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민
  - 신청방법 : 교통과, 쌍봉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FAX
  - 배정기간 : 최초 3개월 단위 및 이후 6개월
  - 제출서류[별첨 3] :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지정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차량등록증
  - 배정기준[별첨 3] : 배점기준에 따라 1가구 1차량 고득점순 배정
  - 배정제외
    - 1톤 초과 화물차량, 16인 이상 승합차량,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
    - ·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,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(단,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자동차는 신청 가능)
    -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
    - · 주·정차 위반 과태료 3회 이상 및 자동차세 체납 차량
- 4. 공고방법 : 여수시 홈페이지(www.yeosu.go.kr)
- 5. 관련근거
  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  -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- 6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0. 9. 1. ~ 2020. 9. 21. (21일간)

### 7. 의견제출

- "여수시 학동북4길 일원(학동북3길 7 ~ 학동북4길 8 구간)에 거주자 전용주차 구획 운영"에 있어 의견이 있는 개인(단체)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여수 시 교통과 방문 또는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제출 기간 : 2020. 9. 1. ~ 2020. 9. 21. (21일간)
- 의견제출 서식 : [별첨 1] 서식 참조
-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
  - 주 소 :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여수시청 교통과 주차관리팀
  - 전 화: 061)659-4148 / FAX: 061)659-5837
- 기타사항 :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# [별첨 1]

	행정	예고에	대한	의각	년 저	]출서			
예 고 내 용		학동북4길 구획 운영″○	•		7 ~	학동북4길	8	구간)	거주자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			생년월일			
	주 소					전화번호			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						

"여수시 학동북4길 일원(학동북3길 7 ~ 학동북4길 8 구간)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운영"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0년 월 일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여수시장 귀하

[별첨 2] 위치도



※ 거주자전용 주차구획(빨간색) : 학동북4길 일원(학동북3길 7 ~ 학동북4길 8 구간)

### [별첨 3] 거주자전용주차제 주차구획지정 신청서

(앞면)

##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 신청서 (제9조제3항 관련)

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 신청서														
<ul><li>◆ 운영시</li><li>◆ 배정기</li></ul>					간, . ~ 20	야간 )					접수번	호		
	성		명				4	주민등록	-번호					
신 청 인	주	-	자틱	4							전화번호	5_		
	소	_	사업	장							휴대전호	}		
기 기 기 기 가 강 번 호							차링	·등록주	소					
신청차량	차	-	명		소유자		·성명		관계			圳	기량	
주차		1지망		2지망			3지망			4지망				
희망구획														
국가유공지	<b>\</b>	해	당, ㅁ	해당 장애인정도 현 (사업장		현 주소지 법장)거주 기간			년					
고엽제 후유증 환	자	해	당, ㅁ	]해당	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, 미취학 아동 수				妃					

\*\*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 재하여 주시고,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

#### 〈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〉

-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권을 교부받는다. (미납 시 배정 취소함)
-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.
-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-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.
-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# 〈이용금지 행위〉

-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
-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, 노점상,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
- ④ 건축자재, 농기계류,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
- ※ 배정 제외 :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,「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」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, 16인승 이상 승합차, 1톤 초과 화물자동차,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,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

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「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」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.

>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여수시장 귀하

첨부서류 : 주민등록번호, 자동차등록원부, 국가유공자 확인원,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(대상자에 한함), 장애인 증명서 각 1부.

#### ◈ 작성요령

- "신청인"란의 "사업장주소"는 상시근무자가 신청할 경우만 작성합니다.
- "신청차량"란은 신청하시는 차량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하며 "관계"란은 신청인 과 소유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.
- "주차희망구획"은 배정받고자 하는 주차구획 표시
- "국가유공자" 및 고엽제휴유증 환자 란은 해당사항에 ○표 하시고, "장애인"란은 해당되면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.
- "현 주소지 거주 기간"은 주민등록상의 현 주소지 거주기간을 기재하시면 되며, 기준일은 배정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"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, 미취학 아동 수" 란은 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과 미취학 아동 수를 기재합니다.

#### ◈ 배점기준

		평 가 항 목	점수
1 5 0	* 장 애 인	· 심한장애	-
1순위 <sup>-</sup> 배정 -	* 국가유공자	· 국가유공자중 상이자	-
	고엽제후유증 환자		-
2순위	スシ	50m 미만	20
	주차 거리	50m이상 ~ 100m 미만	16
		100m 이상	12
		1000cc 미만 경차, 하이브리드, 전기자동차	20
		1000cc ~ 1600cc 미만 승용차	18
	차 종	1600cc ~ 2000cc 미만 승용차	16
		2000cc ~ 3000CC 미만 승용차	14
배정		3000cc 이상 승용차	12
		9인승 이하 소형승합, 1톤이하 화물	10
		10인상 이상 16인승 미만 승합	8
	 관내	15년이상	30
	거주기간	14년이하	거주 기간 × <b>2</b> 점
	기 저	심하지 않은 장애	
	가점	75세 이상 노인 수, 미취학 아동 수	1인당 2점
3순위 상근자		미배정 구간 배정	

- 1. 동점자 선정 :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1순위 배정자, 가점자, 신청 후 대기기간, 최 단 주차구획과 신청자 거주지와의 근거리, 여수시 거주기간 (전입일 자 적용) 순으로 선정
- 2. 신청구획에 대기자가 없는 경우 : 선착순 배정
- ※ 운영구간별 지역특성 등에 따라 배정기준 및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

#### 여수시 공고 제2020-2184호

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[별지 제7호서식]

#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위촉일시	2020년 9월 1일								
공고기간	2020년 9월 1일 ~ 2020년 9월 21일 (21일간)								
	읍·면	동·리	보증인	변호사·법무사	생년월일	비고			
	_	중앙동	김수기	[ ]	1952.01.24	위촉			
		0	하	빈	칸				
위촉내역									
11 7 7 1									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1일

여 수 시 장